〈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 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 울 특 별 시 장

BUTTERFUL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64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07.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7, 1층 (삼성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6953-7876**

[7] 6 2 7 4 4 1 2 2 2 2 0 0 7 0 7 0 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1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4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15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23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5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55
VШ.	교육・훈련(게 대한 설명59
IX.	가맹본부의	직영적 유영 현황 61

- 3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7, 1층 (삼성동)				
(주)버터풀앤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크리멀러스	2022.07	7.27	2022.07.27	김대환	02-69	53-7876	
	법인등록번호	11011	1-8377924 사업자등록번호		879-81-0269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0.21	김대환/		서울특별시 강남	구 테헤란로83길 4	17, 1층 (삼성동)
사용인 (임원)	(주)버터풀앤	' ' ' ' ' ' ' - ' 크리버러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6.6)	크리멀러스		김대환	02-6953-787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글로매스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2022.08.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14, 4층 (신사동, 가미빌딩)	김현덕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뷰티플(Beautiful)과 글래머러스(Glamorus) 에서 착안해 만든 언어 유희적인 네이밍으 로, 버터와 크림이 풍부하고 넘쳐나는 곳이 라는 의미
상 호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OO점	
71 =	BUTTERFUL & CREAMOROUS	상표 출원번호 : 40-2019-0000499
상표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상표 등록번호 : 40-1516637-0000
kh ur	BUTTERFUL & CREAMOROUS	상표 출원번호 : 40-2019-0000510
상표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상표 등록번호 : 40-1516638-0000
그 밖의 영업표지	BUTTERFUL & CREAMOROUS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022년	5,308,557	6,339,026	-1,030,469	892,715	-1,076,901	-1,080,468
2023년	5,841,374	7,861,610	-2,020,236	4,959,129	-1,626,918	-1,736,192

당사는 2022년 8월 (주)글로매스에서 (주)버터풀 앤 크리멀러스로 양도양수하였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르	취 지이		사업경력	
전단역구	<u></u>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대환	사내이사	2022.08 ~ 현재	(주)버터풀앤크리멀러스 사내이사	가맹사업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 ′ `	상근	비상근	역전구(ਰ <i>)</i>	
2023년 12월 31일	1	0	9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 용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배우자)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BUTTERFUL & CREAMOROUS	29류		출원 4020190000499 등록 4015166370000	(주)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2029.09.02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BUTTERFUL & CREAMOROUS	43류		출원 4020190000510 등록 4015166380000	(주)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2029.09.0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사업 현황

1.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를 시작한 날 : 2022년 1월 2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년 5월 3일)

2.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글로매스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김현덕	2022.01.26 ~ 2022.07.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14, 4층 (신사동, 가미빌딩)
(주)버터풀앤 크리멀러스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김대환	2022.08.01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7, 1층 (삼성동)

3.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제빵	베이커리, 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	1.		2022.12.3	1.		2023.12.3	1.
시작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4	4	14	4	10	11	2	9
서울	2	1	1	4	1	3	4	1	3
부산	2	1	1	2	1	1	2	1	1
대구									
인천				1		1	1		1
광주	2	1	1	2	1	1			
대전				1		1	1		1
울산									
세종									
경기	1		1	3		3	3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1		1	1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4	0	0	0	4
2022	4	0	0	0	0	4
2023	4	0	0	2	0	2

6.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7 8	상호/이름	लेल च रो	정보공개서	어 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성자/이급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특수관계인 (사용인)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 - - - - - - - - - - - - - - - - - - -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수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100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589,965	19,372					2곳 산정
서울	1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해당없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8.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	82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표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리 가맹점수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계약 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밀 , 부가가치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63,455	63,455		
광고	(비공개)	2023.01 ~ 12	63,455	63,455		
0.12						
판촉						
한국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서청담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01	02-542-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에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버터풀앤크리멀러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화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어,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장범위		
지급조건		
보험금의 수령절차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	반환 시에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 을 공제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2)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3,800
가입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부가가치세 없음)	5,000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예치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100평,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1,0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없음					
필수설비 (정착물)	없음					
최초 공급 물품 비용	(비공개)	11 000		공급 2일 이전	물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원 · 부재료	(비공개)	11,000		공급 2일 이전	원·부재료 미공급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점포에 대한 계약과 기타 건물주와의 계약 등을 결정하여 체결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건강진단서결과(보건증) 취득 가능자이며,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건강진단서결과(보건증) 취득 가능자이며,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을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영업표지 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220	다음 달 10일 이내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전국 단위 : 가맹본부 100% 분담	다음 달 20일			
9.T. E.B.B	71017	가맹점 단위 : 가맹점 100% 분담	이내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50% 분담	다음 달 20일 이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지급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교육 취소	교육 실시 이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교체 실비	간판 발주 이전		간판 발주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에 대해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00%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실시 후에 반환 불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 후에 반환 불가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 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버터풀 앤 크리멀러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자세한 절차는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 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 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위 사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 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위 사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에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 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급액	비고

2) 당사가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바닐라라떼			
헤이즐넛라떼			
카라멜라떼			
카페모카			
연유라떼			
버터풀슈패너			
바타플수페너라떼			
피넛앤크리멀러스			
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망고에이드		1회 위반: 구두 경고	
청포도에이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한라봉에이드	기 제품을 현매될 수 없음 	^1/3 표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피치레몬에이드			
구아바트로피컬			
딸기요거트스무디			
유자레몬셔벗			
피치릴렉싱스무디			
한라봉스무디			
캐모마일릴렉서			
국화&로즈마리			
캐모마일&타임			
장미&레몬그라스			
복숭아아이스티			
아샷추			
례몬티			

-1- 1
자몽티
한라봉티
밀크코코아
얼그레이밀크티
딸기라떼
제주말차라떼
논알콜뱅쇼
샷추가
버터풀크로와상
크로와상앙뷔르
<u>아몬드크</u> 로와상
카야크로와상
아몬드쇼콜라크로와상
연유크로와상
블루베리요거트크로와상
허니크림치즈크로와상
퀸아망
아몬트퀸아망
미니발렌타인몽블랑
데낄라크림몽블랑
뺑오쇼콜라
소세지페스츄리
할라피뇨소세지페스츄리
커스터드크러핀
소금빵
 초코소금빵
소금빵앙뷔르
버터프레첼
마늘바게트
바질크런치
<u> </u>
버터풀휘낭시에(바통)
초코휘낭시에(바통)
크럼블휘낭시에(바통)
코코넛휘낭시에(바통)
레몬마들렌
에그타르트
에그닥드드

까눌레
초코샌드쿠키
바스크치즈케이크(홀)
바스크치즈케이크(조각)
포요틴쿠키
크랜베리쿠키
누텔라쿠키
우유크림케이크
흑임자케이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아메리카노	2,500		
카페라떼	3,000		
카푸치노	3,000		
바닐라라떼	3,500		
헤이즐넛라떼	3,500		
카라멜라떼	3,800		
카페모카	4,000		
연유라떼	4,000		
버터풀슈패너	3,500		
바타플수페너라떼	3,700		
피넛앤크리멀러스	5,000		
레몬에이드	3,900		
자몽에이드	3,900		
망고에이드	3,900		-11 -1-10 11-1
청포도에이드	4,000		메뉴 가격은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동향
한라봉에이드	4,200	POS, 서면 또는 메일로 공지	또는 기타 사정을
피치레몬에이드	4,300	메글포 6시	고려하여 변동될 수
구아바트로피컬	4,500		있음.
딸기요거트스무디	4,300		
유자레몬셔벗	4,500		
피치릴렉싱스무디	4,800		
한라봉스무디	4,900		
캐모마일릴렉서	4,200		
국화&로즈마리	4,300		
캐모마일&타임	4,300		
장미&레몬그라스	4,800		
복숭아아이스티	3,000		
아샷추	3,500		
레몬티	3,300		
자몽티	3,300		
한라봉티	3,700		

밀크코코아	3,300	
얼그레이밀크티	3,800	
딸기라떼	3,900	
제주말차라떼	3,800	
논알쿌뱅쇼	4,800	
샷추가	500	
버터풀크로와상	3,800	
크로와상앙뷔르	5,000	
아몬드크로와상	5,000	
카야크로와상	6,000	
아몬드쇼콜라크로와상	6,000	
연유크로와상	6,000	
블루베리요거트크로와상	7,000	
허니크림치즈크로와상	7,000	
퀸아망	3,200	
아몬트퀸아망	3,500	
미니발렌타인몽블랑	3,300	
데낄라크림몽블랑	3,800	
뺑오쇼콜라	4,000	
소세지페스츄리	4,800	
할라피뇨소세지페스츄리	4,800	
커스터드크러핀	5,200	
소금빵	2,800	
초코소금빵	3,500	
소금빵앙뷔르	3,800	
버터프레첼	3,500	
마늘바게트	3,500	
바질크런치	3,500	
맘모스빵	3,500	
버터풀휘낭시에(바통)	3,000	
초코휘낭시에(바통)	3,300	
크럼블휘낭시에(바통)	3,300	
코코넛휘낭시에(바통)	3,300	
레몬마들렌	3,000	
에그타르트	3,300	
까눌레	3,500	
초코샌드쿠키	3,500	

바스크치즈케이크(홀)	27,000
바스크치즈케이크(조각)	9,500
포요틴쿠키	7,000
크랜베리쿠키	7,000
누텔라쿠키	7,000
우유크림케이크	5,500
흑임자케이크	5,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랑 어쪼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베이커리,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나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을 설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만약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버 터풀 앤 크리멀러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에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대리점			
일반소매점			
기타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24	7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_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 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4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 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 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 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41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 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제41조제2항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제2항제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제2항제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제2항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 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제2항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제2항제7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제2항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한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제2항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만약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 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계약서 제38조 참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6953-787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했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 면으로 상속사실 통지 → 당사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 가맹본부는 상속인과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이탈리안 식사류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2-6953-787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연중 무휴	문의(02-6953-787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에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버터풀 앤 크리멀러스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H	고노그 서거	부담	비율	보다 저희	비고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미끄	
광고	- , - , - , , -	없음	광고 계획 공고 또는 서면 통지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 가맹정부담액 제시(명세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단위	없음	전액 부담	│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 │ 서) │	매장 광고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	라 유동적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 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46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당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직접 원·부재료 등을 조달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1회 위반 시에 1,000,000원을, 2회 이상 위반 시에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1일 경과할 때마다 20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43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무단으로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가맹 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혐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처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 (1일)	16p 참조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0~1 (3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화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 포 환 경 개 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 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초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에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판촉장려금					
판촉지원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반품지원					
마일리지					
CRM					
테스터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 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02-6953- 787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02-6953- 7876)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버터풀 앤 크리멀러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4주 이내	3,300	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보수 교육	7일 이내	실비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 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 제6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 제7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삼성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47, 1층
2	서울	압구정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59, 지상1층
3	서울	광화문 디타워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1층 103호
4	부산	동래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93, 1층
5	인천	송도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3층 일부호
6	대전	대전 신세계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지상6층 E86호
7	경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5층
8	경기	판교 파미어스몰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8, 1층
9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60, 지하1층
10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3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6953-787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